

條例(案) 檢討報告書

0 主要法的根據

-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조(경기도 파주시 등의 설치)

- . 제1항 : 경기도의 파주군, 이천군 및 용인군을 각각 폐지한다.
- . 제2항 : 경기도의 파주시, 이천시 및 용인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파 주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파주군 일원 |
| 이 천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이천군 일원 |
| 용 인 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용인군 일원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199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 . 제5항 : 이 법 시행당시 폐지군의 조례·규칙은 각각 신설시의 조례·규칙으로 본다. 이 경우 조례·규칙중 폐지군의 명칭은 신설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이천시의회공인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천군"을 "이천시"로 하고,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명칭을 변경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이천시의회위원회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천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이천시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되어 기구 및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직원의 정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또한 의정계를 신설 사무직원 정수를 총전 "15명"에서 "18명"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0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안)

- 본 제정 조례안은 1996년 3월 1일자로 이천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0 이천시의회의원의 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

- 주요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제1항 : 법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4, 회의수당(원격지 회의 출석비를 포함한다) 지급기준은 별표 5, 여비의 지급기준은 별표 6 및 별표 7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회의수당은 회기중 지방의회의 회의(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다)에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군이 1996년 3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주요골자는 "이천군의회"를 "이천시의회"로 명칭 변경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에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 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規則(案) 檢討報告書

1. 主要法的根據

-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 제2조(경기도 파주시등의 설치)
 - . 제1항 : 경기도의 파주군, 이천군 및 용인군을 각각 폐지한다.
 - . 제2항 : 경기도의 파주시, 이천시 및 용인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 시의 명칭 | 관 할 구 역 |
|-------|------------------------------|
| 파주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파주군 일원 |
| 이천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이천군 일원 |
| 용인시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경기도 용인군 일원 |

2. 提案理由 및 檢討意見

본 제정 규칙안인 이천시의회의원신분증규칙안, 이천시의회회의규칙안,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안, 이천시의회 직제규칙안, 이천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경기도 파주시등 5개 도·농 복합형태의 시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천군이 1996년 3 월 1일자로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승격됨에 따라 이천시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려는 사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이천군의회" 를 "이천시의회"로 명칭 변경과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행정기구

개편으로 "사무과장" 을 "사무국장" 으로 하고, 종전 전문위원 1인을 지방행정
사무관 또는 5급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 2인과 지방행정주사 1인으로 하며, 의정계
의 신설로 이천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규칙안을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